

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. 12. 23 조례 제280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광명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광명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광명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광명시 재향경우회(이하“경우회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광명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사업 등) ① 광명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범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)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정산보고 등)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

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령 및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